■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[별지 제6호서식]

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환급신청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
신청인	상호	사업자 등록번호
	성명(대표자)	전화번호
	주소	
납부 내역	납부고지서 발행번호	부과일시
	납부일시	납부금액
	납부방법 [ ] 전용계좌 이체 [ ] 국고금계좌 이체 [ ] 신용카드 등 결제	
환급 신청 내역	환급요청 금액	환급금 수령 계좌 (계좌납부 시에 한함)
	환급신청 사유	

「원자력안전법 시행령」 제156조의2제6항 및 「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」 제16조, 제18조에 따라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환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징수기관의 장 귀하

첨부서류	1.「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」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환급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.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혹은 관련 서류 3. 환급금을 수령할 신청인 명의의 계좌 사본(계좌 납부 시에 한함)

처 리 절 차

신청서 작성	→	접 수	→	검 토	→	결과 통보
신청인		징수기관 (한국원자력안전재단)		징수기관 (한국원자력안전재단)		징수기관 (한국원자력안전재단)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